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056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52호, 2021.2.16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1년 2월 25일

보건복지부 장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(안)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Ⅲ.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FLOW-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(Embolization Device)의 급여기준(치료재료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목	세부 인정사항(신설)
Flow-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(Embolization Device)의 급여 기준 (치료재료)	Flow-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시 사용하는 색전 기구(Embolization Device)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%로 적용함. - 다 음 - 가. 급여대상: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뇌동맥류 1) 뇌동맥류 위치 가) 중대뇌동맥 분지(MCA bifurcation) 나) 내경동맥 말단(ICA terminus) 다) 전교통동맥 복합체(AComm complex) 또는 뇌저동맥(Basilar Atery) 첨부(Apex) 2) 뇌동맥류 모양 : 낭상동맥류(Saccular aneurysm) 3) 뇌동맥류 크기 : 직경 3~10mm이고, 경부 4mm 또는 Dome-to-neck ratio 1~2인 경우 나. 급여개수: 1개 다. 뇌동맥류 색전술용 Micro Coil 및 STENT의 병용사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,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.

부 칙

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Ⅲ. 치료재료 제5장 중 재적 시술료 중 FLOW-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(Embolization Device)의 급여기준(치료재료)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	
Ⅲ. 치료재료		Ⅲ. 치료재료	
제5장 중재적 시술료		제5장 중재적 시술료	
< 신 설 >	< 신 설 >	Flow-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(Embolization Device)	Flow-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시 사용하는 색전 기구(Embolization Device)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%로 적용함.
			- 다 음 -
			가. 급여대상 :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뇌동맥류
			1) 뇌동맥류 위치
			가) 중대뇌동맥 분지(MCA bifurcation)
			나) 내경동맥 말단(ICA terminus)
			다) 전교통동맥 복합체(AComm complex)
			또는 뇌저동맥(Basilar Artery)
			첨부(Apex)
			2) 뇌동맥류 모양 : 낭상동맥류

			(Saccular aneurysm) 3) 뇌동맥류 크기 : 직경 3~10mm이고, 경부 4mm 또는 Dome-to-neck ratio 1~2인 경우 나. 급여개수: 1개 다. 뇌동맥류 색전술용 Micro Coil 및 STENT의 병용사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,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.
--	--	--	---